

제25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
2006.9.4~9.15(12일간)

專門委員 檢討報告

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

企劃行政委員會

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
폐지조례안

專門委員 檢討報告書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8월 28일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8월 29일

3. 제안이유

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을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으로 정하도록 「지방재정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「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■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

5. 검토의견

■ 충청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■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이견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.